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세종조치원역1 행복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05.09)

- **건설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충현로 154, 행복주택 151호
- **공급대상** : 행복주택 52호(일자리연계형 43호, 주거약자형 9호)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제3호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와 연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및 장애인 등 주거약자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주거약자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모집('23.12.15.공고),추가모집('24.09.09.공고)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5.09.(금)**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하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최대거주기간이 10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으로 제한되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본문 [9. 유의사항] 확인)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여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소득·자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검증**하며,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임대조건은 입주자의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세부 입주자격, 임대조건 및 세대구성원 소득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공동인증서 등을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팀)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신분증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지참 / 공고문 본문 [6. 신청서류] 확인)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조치원역과 선로(철길)이 접해있고, 철도를 가로지르는 보행자용 육교가 아파트 부대시설(2~3층)을 관통하여 지나갑니다. (※'지구 및 단지특성'은 공고문 본문 [9. 유의사항] 확인)

•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인터넷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검증, 부적격자통보·소명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5.05.19(월) ~05.21(수)	'25.05.26(월)	'25.05.27(화) ~ 05.30(금)	소명대상 개별통보	'25.08.11(월)	'25.08.25(월) ~ 08.27(수)

-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세종조치원역1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9) 현재 (가)창업인, 지역전략 산업종사자,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중 (나)별도로 정하는 입주자격(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과 무주택·소득·자산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세부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3. 신청자격] 확인

가-1) 창업인(지자체 추천),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지자체 추천) : 세종특별자치시(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소재지로 확인)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예비창업자 포함)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① (창업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창업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해당 기업 근로자를 포함) 또는 예비창업자
- ③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포함하여 목록 별도 첨부(공고문 34페이지)

가-2)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 다음의 기업 등에 근무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을 말함)

- ①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②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나-1)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5.05.10.~2006.05.09.)이며 혼인 중이 아닌 사람

나-2) 신혼부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②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사람
- ③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나-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나-4) 장기근속자 : 미성년자인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가-1) 및 가-2)-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일한 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 ② 가-2)-②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② 세종조치원역1 「주거약자용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9) 현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4. 주거약자용주택] 확인

※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형별 공급호수

공급 형별	공급대상*	건설 호수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m²)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당첨	예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26A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용	92	29	37	26.82	14.9715	3.1974	16.1358	61.1247	철근 콘크리트 / 개별난방	'25.8월
26B	주거약자용	10	9	4	26.68	14.8933	3.1807	16.0516	60.8056		
26C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용	20	8	8	26.91	15.0217	3.2082	16.1900	61.3299		
44A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9	2	4	44.93	25.0809	5.3565	27.0314	102.3988		
44B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0	4	8	44.38	24.7739	5.2909	26.7005	101.1453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용 공급대상) 공고문 본문 [3.신청자격] 확인
- (주거약자용 공급대상) 공고문 본문 [4.주거약자용주택] 확인

■ 임대조건

공급 형별	기본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신분 요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26A	청년	21,240	1,062	20,178	97,350	(+) 4,000	25,240	74,010
						(-) 17,000	4,240	146,930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장기근속자	23,600	1,180	22,420	108,160	(+) 6,000	29,600	73,160
						(-) 19,000	4,600	163,570
26B (주거약자용)	청년	21,240	1,062	20,178	97,350	(+) 4,000	25,240	74,010
						(-) 17,000	4,240	146,930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장기근속자	23,600	1,180	22,420	108,160	(+) 6,000	29,600	73,160
						(-) 19,000	4,600	163,570
26C	청년	21,600	1,080	20,520	99,000	(+) 4,000	25,600	75,660
						(-) 17,000	4,600	148,580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장기근속자	24,000	1,200	22,800	110,000	(+) 6,000	30,000	75,000
						(-) 19,000	5,000	165,410
44A	청년	33,120	1,656	31,464	151,800	(+) 13,000	46,120	75,960
						(-) 27,000	6,120	230,550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장기근속자	36,800	1,840	34,960	168,660	(+) 16,000	52,800	75,320
						(-) 30,000	6,800	256,160
44B	청년	34,920	1,746	33,174	160,050	(+) 15,000	49,920	72,550
						(-) 29,000	5,920	244,630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장기근속자	38,800	1,940	36,860	177,830	(+) 18,000	56,800	72,830
						(-) 32,000	6,800	271,160

- 금회 모집공고는 종전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 하는 것으로 계약시점의 공가 호수에 따라 당첨자(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당첨자의 일정배수)로 나뉘어 선정되며, **기존 계약자의 해약, 주택 보수 등에 따라 '공급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종초지원역1 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4] 제3호에 따라 공급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과 장애인 등 주거약자 세대에 공급하는 "주거약자용주택"입니다. 공급 이후 남은 공급물량은 추후 일반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공급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주택은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103동(3~12층)에 공급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한 것이며, 향후 전환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 : 19세 미만
- **외국인인 신청 불가**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본문 [9. 유의사항] 확인)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공급신청자는 아래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또는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급대상

금회 공급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입주자격 요건(가, 나, 다, 라)을 모두 갖춘 대상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거약자용주택은 공고문 본문 [4.주거약자용주택] 확인)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쟁 시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공급형별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합니다.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예비창업자 포함) 우선 선정	⇒	추첨
---	---	----

* 청약신청서 작성 시, 우선선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자께서는 신청인 필수 부가정보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입주예정인 사업장 근무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약신청자는 **입주자격 요건(가, 나, 다, 라)을 모두 갖추어야**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가. 직업 요건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1) 창업인(지자체 추천),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지자체 추천) : 세종특별자치시(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소재지로 확인)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예비창업자 포함)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① (창업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창업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해당 기업 근로자를 포함) 또는 예비창업자
- ③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세종특별자치시 특화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포함하여 목록 별도 첨부(공고문 34페이지)

가-2)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 다음의 기업 등에 근무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을 말함)

- ①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②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 가-1) 은 **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의 장이 정한 입주자 선정요건**으로 서류제출 후 지자체의 입주자격(직업요건) 검증·추천을 통해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LH가 접수를 받아 지자체에 검증·추천을 요청하고 지자체로부터 확인받는 방식)

나. 신분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나-1)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5.05.10.~2006.05.09.)이며 혼인 중이 아닌 사람

나-2) 신혼부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②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사람
- ③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나-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나-4) 장기근속자 : 미성년자인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가-1) 및 가-2)-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일한 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 ② 가-2)-②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다. 무주택 요건(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주택¹⁾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① 청년 : 입주자 본인
- ②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③ 그 밖의 경우(①, ② 외의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목에 따른 세대원(무주택세대구성원²⁾)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공고문 본문 [8.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확인

* 2)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라. 소득·자산·주택청약종합저축 요건

- ▶ **소득 요건**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맞벌이 130%) 이하일 것
- ▶ **자산 요건**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단, '청년'인 경우 25,400만원) **이하** 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일 것
- ▶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액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인	4,317,797원 이하	120%	-	-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 원 이하	13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소득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기준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 해당 세대란

① '나. 신분요건'이 '청년'인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	해당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청년	- 신청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청년	신청자	-

② '나. 신분요건'이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장기근속자' 인 경우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③,④는 <u>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u>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⑤는 <u>신청자와</u>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청년 계층 출생자녀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청년 계층	가구원 수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최종 소득·자산기준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0인	120%	254,000,000원	38,030,000원
	2인	0인	110%	254,000,000원	38,030,000원
		1인	120%	279,000,000원	41,830,000원
	3인 이상	0인	100%	254,000,000원	38,030,000원
		1인	110%	279,000,000원	41,830,000원
		2인 이상	120%	305,000,000원	45,630,000원
세대원(본인)	1인	0인	120%	254,000,000원	38,030,000원
	2인	0인	110%	254,000,000원	38,030,000원
		1인	120%	279,000,000원	41,830,000원
	3인 이상	0인	100%	254,000,000원	38,030,000원
		1인	110%	279,000,000원	41,830,000원
		2인 이상	120%	305,000,000원	45,630,000원

《 청년 외 계층 출생자녀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맞벌이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청년 외 계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X	2인	0인	11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20%	371,000,000원	41,830,000원
		3인	0인	10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10%	371,000,000원	41,830,000원
			2인 이상	120%	405,000,000원	45,630,000원
		4인 이상	0인	10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10%	371,000,000원	41,830,000원
			2인 이상	120%	405,000,000원	45,630,000원
	O	2인	0인	130%	337,000,000원	38,030,000원
		3인	0인	12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30%	371,000,000원	41,830,000원
		4인 이상	0인	12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30%	371,000,000원	41,830,000원
			2인 이상	140%	405,000,000원	45,630,000원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 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30%	140%
1인	-	-	4,317,797원 이하	-	-
2인	-	6,024,703원 이하	6,572,404원 이하	7,120,104원 이하	7,667,804원 이하
3인	7,626,973원 이하	8,389,670원 이하	9,152,368원 이하	9,915,065원 이하	10,677,762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9,435,897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11,151,514원 이하	12,009,323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9,934,153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11,740,362원 이하	12,643,467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0,706,395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12,653,012원 이하	13,626,320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4. 주거약자용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

- ① [일자리연계형 주거약자] 금회 공급하는 주거약자용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공고문 본문 [3.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② [일반 주거약자] ①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 신청자격 중 나(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 라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거약자용주택은 경쟁 시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공급형별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합니다.

[주거약자용주택]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직업·신분요건 갖춘 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신청자격을 갖춘 주거약자(일자리연계형 주거약자)] 청약신청서 작성 시 “신청주택 및 신청자격 등”의 직업·신분요건 란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신청자격은 공고문 4페이지의 '입주자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 란**

- ㉠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이 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 시 “**순위**”

구 분	순 위	
청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연접지역(충청북도 청주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충청남도(단, 1순위에 해당하는 천안시, 공주시 제외)]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연접지역(충청북도 청주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충청남도(단, 1순위에 해당하는 천안시, 공주시 제외)]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 시 “**주거약자용 배점**”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 ^{*1)} 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부양가족 범위는 아래 표 참고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2)} (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아래 “부양가족의 범위” 참고

*2) 당해지역 거주기간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일로부터 계속 거주기간을 산정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확인서로 장애의 정도 확인

***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5.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인터넷/현장 중 택1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구분	신청접수				
인터넷 모바일	'25.05.19(월) 10:00 ~ 05.21(수) 17:00 * 신청기간내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5.05.26(월) 16:00 이후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필수	◎온라인/현장접수 '25.05.27(화) ~ 05.30(금) 5. 신청방법 참조	'25.08.11(월) 16:00 이후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게시	◎전자계약 '25.08.25(월)10:00 ~ 08.26(화) 17:00
현장	'25.05.21(수) 10:3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현장계약 '25.08.27(수) 10:00 ~ 17:00 (중식시간 12:00~13:00제외)

-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현장신청접수, 서류제출, 현장계약체결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238-3, LH세종특별본부 1층 (주택판매팀)
 - 현장 신청접수, 서류제출, 현장 계약체결 등 업무는 점심시간(12~13시) 제외입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공동인증서 등을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팀)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신분증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지참)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서류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확인>서류제출 대상자 명단 조회
 - ※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은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당첨확인인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으로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4에 따라 '창업인/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여부는 지자체에서 심사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 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소득 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소득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소유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 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자료의 출처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기관의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갱신 계약이 거절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청약 방법

* 청약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인증서(공동인증서 등) 로그인>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건설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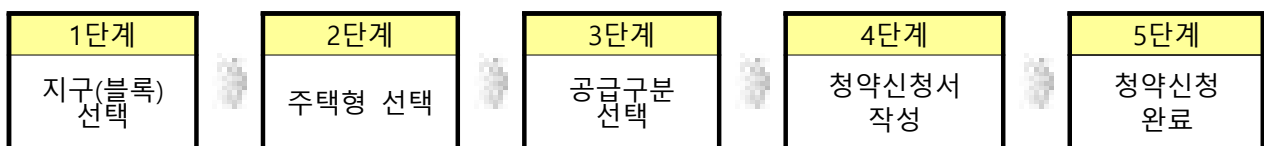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등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인증서 로그인>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건설임대**
 - 앱 ("LH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등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5.05.19(월) 10시부터 접수마감일 2025.05.21(수) 17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 방법

*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공고문 본문 [6. 신청서류] 확인 후 본인 신분증 및 해당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장소로 방문하시면 인터넷 접수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하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신청계층의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현장 신청접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LH세종특별본부 1층 (주택판매팀)
- 현장 신청접수 일시 : '25.05.21(수) 10:00 ~ 17:00 (단,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아래 [6.신청서류] 별도 구비요)**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인감증명방식인 경우]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본인서명방식인 경우]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 위임장의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 외 '여권정보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서류제출을 완료한 경우 서류제출을 위해 재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6.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신청자별 해당 세대는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이후 청약신청 철회 불가
- ※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공급대상자별 제출서류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신청자] 공고문 15,16페이지 확인 후 해당서류 모두 제출
- [주거약자용주택 신청자] 공고문 15,17페이지 확인 후 해당서류 모두 제출

■ 서류제출방법 (①,② 중 택일)

① 온라인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 온라인 서류제출은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고객센터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인터넷 서류접수 이용시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방문접수	기간 : 2025. 05.27(화) ~ 05.30(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238-3, LH세종특별본부 1층 주택판매팀 - 점심시간(12:00~13:00), 주말 및 휴일에는 서류제출을 받지 않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현장신청자는 청약신청접수 시 서류제출을 완료한 경우 해당 서류로 갈음합니다.

※ 서류 발급처 안내

구분	발급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직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K-스타트업(창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 증빙서류	K-스타트업(창업진흥원, www.k-startup.go.kr)
산업단지 계약(변경) 확인서	팩토리온(www.factoryon.go.kr)
중소기업 주택우선공급 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es.go.kr/sanhakin)
임신진단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병역의무이행 재청약자) 병적증명서	병무청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행정복지센터 등

- 서류가 중첩될 경우 1부만 제출,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16~17페이지의 [공급대상별 증빙서류]도 반드시 확인!!)

구분	제출대상, 작성방법, 서류내용 등	비고
공급신청서	• 공급신청서는 현장접수자만 제출하며, 현장제출 사무소에 (공사양식) 비치 ※ 인터넷 청약신청자 제출 불요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대상)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 : 공고문 7페이지 확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장기근속자"의 해당 세대 : 공고문 7페이지 확인	공사양식 ②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공사양식 ③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공사 양식 ④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각서 양식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공사 양식 ⑤
주민등록표 등본 (전부표기)	신청자 본인 배우자 / 예비배우자 해당자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각1통 [유의] 주민 등록 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청년", "한부모가족" 신분으로 신청하는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 신분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주민등록표 초본 (전부표기)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자(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추가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임신진단서 (해당자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미제출 시 입주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각1통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 입양자녀를 인정받고 싶은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 병역의무이행 후 재청약 시 병적 증명서 및 이전 공공임대주택 계약기간 확인 가능서류 등 기타 입주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직업요건 / 신분요건 증빙서류 (※ 15페이지 공통 제출서류도 반드시 확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제출서류											
「직업요건 필수서류」 ①~③ 중 하나 해당되어야 함	① 창업인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지자체 심사용]	• 입주신청서(※서류제출장소에 '양식⑥' 비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지자체심사용, ※서류제출장소에 '양식⑦' 비치)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예비창업자는 창업 후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포함)을 '25.06.30일까지' 제출 • 입주대상별 해당서류 <table><thead><tr><th>입주대상 구분</th><th>해당자 추가서류</th></tr></thead><tbody><tr><td>1인 창조기업 창업자</td><td>K-스타트업(창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 증빙서류</td></tr><tr><td>창업자(근로자 포함)</td><td>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td></tr><tr><td>예비창업자</td><td>(창업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확인</td></tr><tr><td>세종시 지역특화산업 근로자</td><td>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td></tr></tbody></table> ※ (주업종코드확인)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기업) → My홈택스 → 기타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클릭 → 상세보기		입주대상 구분	해당자 추가서류	1인 창조기업 창업자	K-스타트업(창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 증빙서류	창업자(근로자 포함)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예비창업자	(창업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확인	세종시 지역특화산업 근로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입주대상 구분	해당자 추가서류											
	1인 창조기업 창업자	K-스타트업(창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 증빙서류											
	창업자(근로자 포함)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예비창업자	(창업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확인												
세종시 지역특화산업 근로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산업단지 종사자	• 산업단지 계약(변경) 확인서 * 발급처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재직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1년 이상 근무(예정) 기간 소명 자료 추가제출												
③ 중소기업 종사자	• 중소기업 주택우선공급 확인서(※청약신청자는 서류제출 시 확인서 신청내역(증빙)으로 제출) ※ 청약신청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중소기업근로자 확인서 발급신청(확인서 신청기간 : 2025.05.27(화) ~ 05.30(금))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공사가 해당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근무 이력 및 근무기간을 확인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재직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1년 이상 근무(예정) 기간 소명 자료 추가제출												
	④ 청년	• 추가서류없음 (공통 제출서류로 자격 확인)											
「신분요건 필수서류」 ④~⑧ 중 하나 해당되어야 함	⑤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자녀의 기본증명서 (신혼부부 자격 중 자녀의 나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⑥ 예비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서류제출장소에 '양식⑧' 비치)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서류제출장소에 '양식⑨' 비치) •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예비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입주 전까지 혼인 후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추가 제출 (미제출 시 입주 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⑦ 한부모가족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⑧ 장기근속자	•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해당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①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와 ②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본인/배우자 각각 제출 • [경쟁 시 우선선정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위 직업요건 필수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입주예정인 사업장 근무여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제출 요(※ 확인 불가 시 우선선정 제외)												

■ **주거약자용주택 증빙서류** (※ 15페이지 공통 제출서류도 반드시 확인!!)

주거약자용주택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 ①~⑥ 중 하나 해당되어야 함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	제출서류 없음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부(지청)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12.7.1전 등록자)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국가보훈부(지청)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 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부(지청)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보훈부(지청)
필수	- 아래 ⑦,⑧ 중 하나 해당되어야 함 ⑦ [일자리연계형 주거약자 신청자] 공고문 16페이지의 ‘직업요건 및 신분요건’ 필수서류 ⑧ [일반 주거약자 신청자] 공고문 16페이지의 ‘신분요건(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중 하나)’ 필수서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①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와 ②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본인/배우자 각각 제출 [가점 해당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확인서(신청자 본인 해당자)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 아래서류 각1통 ※ 주거약자용주택 경쟁 시 “순위” 관련 서류		
	추가 (해당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 서류)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위 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제출	- 국민연금공단 등 - 해당 직장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5.08.11.(월) 16시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현장에 방문하여 계약하시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전자계약**을 해주시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현장계약 장소로 오셔서 **현장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순번은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나의청약정보 > 마이페이지 > 예비입주자 순위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부적격자 통보 및 소명안내, 계약 및 입주에 대한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청약신청 후 주소 및 연락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팀(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자계약 ['25.08.25(월) 10시 ~ 08.26(화) 17시]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입금	우리공사 입금확인 (SMS 발송)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Google Play)
		로그인 (공동인증서/휴대폰인증) → 계약체결(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보관(공동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이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 ['25.08.27(수) 10시~17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계약금 입금 후 현장 계약기간 내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LH 세종특별본부 1층 주택판매팀'에서 현장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공통서류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및 여권정보증명서*,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생략가능

8.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총 자산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총 자산	일반 자산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증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9.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tr><th>입주자격</th><th colspan="3">최대 거주기간</th></tr><tr><td>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td><td colspan="3">10년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td></tr><tr><td rowspan="3">주거약자용주택</td><td>계층별</td><td>대학생, 청년 계층</td><td>10년</td></tr><tr><td>적용</td><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tr><tr><td>기간</td><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td>20년</td></tr></table>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0년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			주거약자용주택	계층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적용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기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0년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																	
	주거약자용주택	계층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적용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기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 후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합니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는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갱신계약 등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및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갱신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갱신임대 조건은 갱신계약 시점 입주자의 소득 및 임대시세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table><tr><th>구분</th><th>갱신계약 조건</th></tr><tr><td rowspan="3">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용</td><td>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직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신분요건 미적용)</td></tr><tr><td>② 직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 한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td></tr><tr><td>③ 자산·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계약 체결을 가능하나, 소득금액 초과비용 등에 따라 소정의 할증이 부과됩니다.</td></tr><tr><td rowspan="3">주거약자용</td><td>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직업·신분요건 미적용)</td></tr><tr><td>② 자산·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계약 체결을 가능하나, 소득금액 초과비용 등에 따라 소정의 할증이 부과됩니다.</td></tr><tr><td></td></tr></table>	구분	갱신계약 조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용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직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신분요건 미적용)	② 직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 한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③ 자산·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계약 체결을 가능하나, 소득금액 초과비용 등에 따라 소정의 할증이 부과됩니다.	주거약자용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직업·신분요건 미적용)	② 자산·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계약 체결을 가능하나, 소득금액 초과비용 등에 따라 소정의 할증이 부과됩니다.									
	구분	갱신계약 조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용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직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신분요건 미적용)																	
② 직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 한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③ 자산·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계약 체결을 가능하나, 소득금액 초과비용 등에 따라 소정의 할증이 부과됩니다.																			
주거약자용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직업·신분요건 미적용)																		
	② 자산·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계약 체결을 가능하나, 소득금액 초과비용 등에 따라 소정의 할증이 부과됩니다.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자격 확인합니다. -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되고,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임대조건의 변경(임대조건의 상한, 증액, 할증)은 공급신청(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및 갱신계약(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한 시점 기준) 시점의 입주자 소득수준 등을 확인하여 계약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기간 중에 소득변경 등에 따라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릅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등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여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소득·자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검증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청약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LH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팀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지구 및 단지특성	• 본 단지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로서 건물의 뼈대 및 세대간 벽체는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인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주거용(건물내) 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7m입니다. ■ 일반사항 및 지구여건 • 주변 도로, 건물 및 기타시설(혐오시설 유무 등), 당 아파트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인근 주택 및 상가, 주변개발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출입은 불가능 합니다.) • 단지 동측에 조치원역과 철도운행을 위한 선로(철길)가 접해있어 열차운행 및 선로유지보수 등을 위한 각종작업 등으로 인해 주야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서측에 위치한 도로(충현로)의 차량통행으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의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 기타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상의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공용부분의 시설물 : 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합니다. • 세대별 마감자재를 포함하여 자재 중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임대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사진행, 자재수급, 파업 및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별도 안내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 또한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 관청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전실의 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건물의 단지배치도,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시설면적 등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인해 층간, 세대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후부터 12개월*간 입주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LHQ+라운지 또는 하자접수 센터 등 : 입주만료일 + 6개월)
- 개별 인테리어 공사(줄눈, 도배, 커튼, 시트지, 중문 공사 등 모든 공사 포함) 입주지정기간개시일 이후 잔금을 완납한 입주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단지계획 및 공용공간

- **철도를 가로지르는 기존 보행자용 육교가 아파트 부대시설(2~3층)을 관통하여 지나갑니다.**
- 『중소기업판로지원법』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권고』에 의거하여 단지 내 승강기 설치업체가 선정됩니다.
- **어린이집(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예비인증 예정입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하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 아파트 옥상에는 태양광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옥상은 평지붕이며 안전 난간대(콘크리트 난간, 투시형 난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옥상은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화재 등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옥탑에 TV안테나,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상태에 따라 설치개소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조망 및 생활상의 불편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상 엘리베이터 기계실 장비와 엘리베이터 등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는 동력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 및 근접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지상1층에 전기실·발전기실이 있으며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접 세대는 매연의 발생,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상1층에 펌프실·저수조·헬륨 등이 위치해 있으며, 인접 세대는 설치장비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상1층에 PIT 등의 환기를 위한 헬륨 등의 환기구 및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환기헬륨 등의 가동 시 먼지,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급배기구, DA(환기구), 헬륨실, 제연실 등의 인접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 PIT층 등에는 집수정 및 배수펌프 등이 설치되며, 인접 세대는 장비가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 PIT층 및 옥상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헬 및 외기 취입구가 설치되며, 인접 세대는 화재 및 시험을 위한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 PIT층, 각동 중간 PIT층 및 복도 통로에는 설비배관 등의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대)는 단지 남측 비주거(옥외) 주차장에만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대)는 단지 남측 비주거(옥외) 주차장에만 설치될 예정이며, 원거리 거주세대(101동, 102동 등)은 이용 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대)는 위치 및 개소가 개인취향·사용불편 민원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대)는 지반 높이에 따라 계단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88대(주거용 73대, 비주거용 15대)로 되어있으며, 주거용은 차량출입통제설비로 출입 관리가 될 예정입니다
- 주거용(건물내) 주차장 상부에는 급수, 급탕, 난방, 소방 등의 각종배관, 배선 등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이로인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시스템은 주거용 주차장 2층(과금형 콘센트 2대, 완속2대), 3층(급속1대, 완속2대, 과금형 콘센트 2대), 1층 비주거용 주차장(과금형 콘센트 1대)가 설치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이 아파트 각 동의 1층 출입구 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복도천장 내부는 기계설비(스프링쿨러 등) 및 전기, 통신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등에 설치되는 냉난방용 실외기의 가동 시 인접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아파트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 등)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 및 제연댐퍼가 설치되며,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복도에는 합성수지창이 설치됩니다.
- 주차장, 승강기내 동 주현관, 단지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저층부 세대(옥상조경에 접하는 세대 포함)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세대(옥상조경에 접하는 세대 포함) 중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이 근접하여 배치된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등 단지 내 조경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규격, 수종, 위치 등)및 시설물(재료, 형태, 위치 등)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유부 및 마감재

-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은 임대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세대별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생활습관 변화(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 및 층에 따른 추가 방법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복도에 면하는 침실창에는 방법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천연자재가 사용된 경우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시 팜플릿, 현장사무소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천장에는 스프링클러헤드 및 감지기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도시가스) 방식으로 발코니에는 보일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발코니에 노출로 설치(천정,벽)되는 각종설비(우오수배관 및 환기장비 등)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설비(우오수배관 및 환기장비 등)는 위치와 개수가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화재시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비상탈출구)가 1면에 설치(44B형 제외)될 예정입니다. 44B 형은 옆세대로 대피할 수 없어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4층~10층 대피공간에는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화재 시 대피를 위한 대피공간(44B 형)의 창호는 안쪽으로 열립니다. • 발코니에 접하여 에어컨 설치를 위한 공간(실외기실)만 제공하고 에어컨 및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에어컨 가동 시 그릴창을 개방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배관용 슬리브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거실에만 설치됩니다. • 발코니에는 세탁기 이외 건조기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설치되지 않으며, 건조기를 세탁기 상부 설치하는 경우, 수납선반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해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수납선반의 해체, 이동은 입주민이 하셔야 하며 퇴거 시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 취사 및 난방을 위한 연료로 도시가스(LNG)가 공급됩니다. 취사를 위한 가스배관 연결은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 시 가스공급업체에 연락하여 업체기술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급수급탕분배기 및 난방용 온수분배기 등과 가림막 등이 설치되어 수납공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통합분전반(전기, 통신)은 세대내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별 급수 계량기는 복도 내 공용PD에 설치되며, 전기·수도 등 사용량은 자동으로 검침됩니다. • 욕실은 조립식 욕실(UBR)로 설치되며, 욕실 바닥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고, 상부에는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가 접해 있는 벽, 바닥 및 천장은 도배, 바닥장판지, 타일 등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 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소방시설(SP헤드, 화재감지기, 주방자동소화장치, 비상방송스피커 등)은 임의 변경, 탈착, 파손, 가구 등 물건적치로 인한 소방시설 작동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실내 환기는 1종 강제급배기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기타사항	• 우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되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배우자는 반드시 신청 당시 제출한 예비배우자이어야 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등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이 해제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8.12.11)에 따라 분양권 등(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당첨자 발표일 이전에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부적격 해제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의 타인소유 차량은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해당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 해당없음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적용 여부
건축부문	단열조치 준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방습층 설치	적용
기계부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미적용(개별난방)
	고효율 가정보일러	적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전기부문	수변전설비 설치(고효율)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조명설치(고효율)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 보증인	감리회사
세종 조치원	한국토지 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건축	대웅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베스텍파트너스
		기계	호등종합건설 주식회사		
		토목	주식회사대창건설		
		전기	주식회사 광덕		
		통신	주식회사 원피앤에스		
		소방	주식회사 서하		
		도시가스	(주)대양엔지니어링		
		조경	미정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 ~ 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전체세대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주방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청각장애인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욕실 출입문 규격확대 불가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신청주택의 **공사진행이 완료되어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예정입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3. 문의처 등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청 약 상 담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13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입주자격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도농정책기획과 ☎ 044-300-2722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입주자격] 외 청약상담은 LH(☎1600-1004)로 문의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청약신청>건설임대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청약 → 임대주택>청약신청>건설임대	
서류제출 장소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LH 세종특별본부 1층 (주택판매팀)	
당첨자 ARS	☎ 1661-7700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5. 09

세종특별자치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해당 여부는 재직 중인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매출 업종이 아래 한국표준 산업분류(통계청-통계분류포털) 코드에 해당하는지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확인합니다.

※ 창업인/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추천자격 관련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도농정책기획과 ☎ 044-300-2722

※ [창업인/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추천자격] 외 청약상담 문의 LH (☎ 1600-1004)

분류명	한국표준산업 분류	
	표준산업코드(5자리)	항목명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부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7213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학 관련 제품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붉은 테두리 안은 접수 담당자 작성란입니다.)

행복주택 신청 공급형		☐ 26A ☐ 26B(주거약자용) ☐ 26C ☐ 44A ☐ 44B	접수번호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연락처	010 -		
	주민등록표등본 주소			
신청 입주대상		☐ 1인 창조기업 ☐ 창업자 ☐ 예비창업자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 근로자 ※ 예비창업자는 신청 시 아래 사업정보 작성란(본점 소재지, 주요사업 업태/종목, 표준산업 분류코드)은 사업계획으로 작성하되, 제출기한까지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사 업계획과 상이할 경우 당첨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 있음을 확인함.		
사업 정보 (사업자등 등록 해당사항 기입)	사업장명 (법인명)			
	창업일(개업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주요사업 업태/종목			
	표준산업 분류코드	※ 분류코드 5자리 및 분류명 기재		

세종조치원역1블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행복주택) 입주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추천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붙임 : 입주대상 확인 제출서류 1식

2025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창업인 및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자격여부는 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이하 동일)의 추천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동의가 필수적이며, **미동의 시 입주대상자 지자체의 추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수집·이용의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자체 심사 및 추천 목적**
- (2)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 수집항목	- 개인 식별정보 (성명, 성별,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e-mail) - 신용정보 (기업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소재지, 업종 및 목적 등)
민감정보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3)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보관하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단,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및 민감정보)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주대상자 추천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추천이 불가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입주 추천신청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1) 제공받는 자 : 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대상자 심사 및 추천** 관련 활용 등
- (3)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추천 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4) 제공받은 자(지자체)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공된 날부터 3년간 보유·이용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자 추천이 불가합니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대상자 추천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5 월 일

신청자 : (서 명)